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0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황 희·안규백·한민수

강선우 • 이용선 • 어기구

박 정・민홍철・차지호

부승찬 · 조 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법률 제 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을 "전담기관을"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문화분야 지능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기획·조사·연구·개 발
-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

문기술 지원

- 4. 문화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관리·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지원
-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8. 문화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한국문화정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정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정보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 화정보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정보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 정한 것은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 연구와 개발) ① • ② (생 략) 연구와 개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 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 -----전담기관을--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신 설>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 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 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 (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 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
- 문화분야 지능정보화 촉진계
 획 수립
-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 제도·기술의 기획·조사·연 구·개발
-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 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 4. 문화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관리·운영과 문화정보자 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지원
-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 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8. 문화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

 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 제13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 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 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 업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 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현행과 같음)